|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수당 지급 규정 |  |  |
|  | | | | |

제수당 지급 규정

제정 2020. 1. 6. (규정 제29호)

일부개정 2020. 6. 3. (규정 제39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춘천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의 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ㆍ지급범위ㆍ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은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시간외근무수당)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익월 5일까지 지급하되, 다만 12월분은 12월 말일까지 지급한다.

제4조(야간근무수당) ① 야간근무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 근무시간은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의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제5조(휴일근무수당) 휴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제6조(연차수당) 문화원 복무 규정 제15조에 의거 잔여 연차 휴가가 발생한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그해 12월 말일까지 지급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 규정을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원 본인의 귀책사유로 휴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정근수당)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 보수지급일에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1.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 현재 문화원 직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직원에게 지급한다.

2.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7월 1일 현재 문화원 직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지급대상기간인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직원에게 지급한다.

제8조(가족수당) ① 직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게는 가족수당을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다른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는 제외하며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인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양가족이라 함은 부양의무를 가진 직원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취학, 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직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직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 및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및 19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형제 자매

제9조(겸임수당) 직원이 본직 외에 다른 직에 겸임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삭제 <2020. 6. 3.>

제11조(준용) 이 규정 및 문화원 제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지급 기준 및 지급 방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20. 1. 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6. 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
| --- |
| ■ 제수당 지급 규정 [별표 1] |
|  |
| 제수당 지급 기준표 (제3조, 제6조, 제7조 및 제8호 제1항 관련) |

|  |  |  |  |
| --- | --- | --- | --- |
| **수 당 명** | **지 급 내 용** | **지급대상** | **비 고** |
| 시 간 외  근무수당 | ◦ 통상임금×1.5/209×시간 | 해당자 | 1일 12시간  이상 근로할 수  없음 |
| 야 간  근무수당 | ◦ 통상임금×0.5/209×시간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의 근로) | 해당자 |
| 휴 일  근무수당 | ◦ 통상임금×1.5/209×8시간×일수 | 해당자 |
| 연차수당 | ◦ 통상임금×1/209×8시간×일수 | 해당자 |
| 정근수당 | ◦ 1년 미만 : 미지급  ◦ 2년 미만 : 월봉급액의 5% 해당금액  ◦ 3년 미만 : 월봉급액의 10% 해당금액  ◦ 4년 미만 : 월봉급액의 15% 해당금액  ◦ 5년 미만 : 월봉급액의 20% 해당금액  ◦ 6년 미만 : 월봉급액의 25% 해당금액  ◦ 7년 미만 : 월봉급액의 30% 해당금액  ◦ 8년 미만 : 월봉급액의 35% 해당금액  ◦ 9년 미만 : 월봉급액의 40% 해당금액  ◦ 10년 미만 : 월봉급액의 45% 해당금액  ◦ 10년 이상 : 월봉급액의 50% 해당금액 | 해당자 |
| 가족수당 | ◦ 배우자 : 월 40,000원  ◦ 첫째자녀 : 월 20,000원  ◦ 둘째자녀 : 월 60,000원  ◦ 셋째 이후 자녀 : 1명당 월 100,000원  ◦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 1명당 월 20,000원 | 해당자 |
| 겸임수당 | ◦ 기본급의 10%내 | 해당자 |